

“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기자회견시 발언”과 “대전협 보도자료”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

1. 관련 기사

- 3.29.(금) “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기자회견시 발언”과 “대전협 보도자료” 인용 보도.

2. 설명내용

① Intervention(의견조회)이 ILO의 “개입”이라는 주장 관련

- ✓ 어제밤에 늦게 ILO에서 한국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서 개입요청에 대한 긴급개입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..(‘24.3.29. 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)
- ✓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(ILO)의 개입(intervention)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.(‘24.3.29. 대전협 보도자료)

- ILO의 의견조회(intervention)는 ILO 헌장(Constitution)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님. ILO도 의견조회(intervention)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 · 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
- 의견조회(intervention)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,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,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됨
- 즉,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(judge)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, 권고도 제시하지 않음
- 이로써 한국어의 “개입” 의미보다는 “의견조회”의 의미에 부합함

- 따라서, 이번 의견조회(intervention)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거나,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임

②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

✓ 어제밤에 늦게 ILO에서 한국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서 개입요청에 대한 긴급개입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..('24.3.29. 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)

- 3.28.字 ILO 사무국이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나 평가를 한 바 없음
- 또한,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예외가 인정됨
 - * (ILO 제29호 협약 제2조) 2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'강제노동'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.
 - (라) (생략)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
- 따라서 정부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거나, ILO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

③ 대전협 보도자료상 3.21.字 코리아 헤럴드 기사 인용 관련

✓ 정부는 “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”고 주장해왔는데, 해당 기사를 통해 “강제노동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.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”라는 국제노동기구(ILO)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.('24.3.29. 대전협 보도자료)

- 대전협 보도자료가 언급한 코리아 헤럴드 기사는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ILO의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, 이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함

**④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잘못되었다는
('호도', '사기극') 주장 관련**

- ✓ 최근 전공의들이 ... ILO(ILO)에 한 개입요청에 대해 ILO측이 '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'고 통보해 종결처리 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“사실이 아니다”(‘24.3.29. 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)
- ✓ 우리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.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조치였기 때문”이라며 “공식 답변을 받고 보니 절차가 종결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”이라고 강조했다.(‘24.3.29. 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)

- 대전협이 '24.3.13.(수) 의견조회(intervention)를 요청하였고, 이는 26명의 전공의 명의로 제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
- 통상 ILO는 의견조회(intervention) 요청이 접수되면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함
 - 이에 고용노동부가 문의한 결과,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(intervention) 요청 자격은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서,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적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음
- 대전협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였고, 정부가 대전협의 의견조회 재요청을 두고 종결 처리되었다고 한 바도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	책임자	과 장	김형광	(044-202-7129)
	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	서기관	권순지	(044-202-7133)
		담당자	사무관	강재영	(044-202-7394)



